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661호(號) 1932(昭和 7)년 7월 21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83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2(昭和 7)년 7월 2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2(昭和 7)년 7월 2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국선(局線) 내(內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 중(中) 「목재(木材: 10급[級]의 것. 갱목[坑木]을 제[除]함). 상판(箱板: 절조[切組]<sup>1)</sup>가 있는 것을 포함[包含]함)」의 항(項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목재(木材: 10급[級]의 것. 갱목[坑木]은 제[除]함)	신의주(新義州), 단동(安東), 신의주하급소(新義州荷扱所), 함흥(咸興), 부령(富寧), 고무산(古茂山), 회령(會寧)	국선(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	차급(車扱)	500km(浬)까지 1할(割)5푼(分) 감(減) 501km(浬) 이상(以上) 2 할(割) 감(減)	1 본(本) 화물(貨物)은 별도(別途)로 정(定)한 톤수(噸數)에 의(依)하여 취급(取扱)하는 것으로 함 2 본(本) 운임(運賃)은 지정운송취급인규칙(指定運送取扱人規則) 제10조(條)제3호(號) 적용상(適用上) 보통운임(普通運賃)으로 간주(看做)함
상판(箱板: 절조[切組]가 있는 것을 포함[包含]함)	동(同)	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, 인천(仁川), 원산(元山), 간남포(杆南浦), 목포(木浦), 군산(群山)	동(同)	301km(浬) 이상(以上) 2 할(割) 감(減) 501km(浬) 이상(以上) 2할(割)5푼(分) 감(減) 801km(浬) 이상(以上) 3 할(割) 감(減)	

1) 역자: 목재·철재 등을 기둥이나 들보에 짜 맞추기 위해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것.